

# 강요된 망각과 기억할 의무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은 즉시 제정되어야 한다

이창수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국민위원회 특별법정책위원장

우 리 사회는 과거의 과오에 대해서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저절로 수채화같이 흐릿한 기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망각하게 하는 구조 속에서 일상화된 것이다.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6·25전쟁휴전이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이하 진상규명법안)이 부결되면서 이런 사회적 망각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이고 구조적으로 조직된 망각임이 입증됐다.

## 진상규명법의 국회 제출부터 부결까지

진상규명법안은 2001년 9월 국회에 제출되어 2년이 지난 2003년 11월에서야 국회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되었고 2003년 12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로 회부됐다. 그리고 법사위는 올해 2월 2일 진상규명법안을 통과시켜 국회 본회의에 부의시켰다. 그러나 당시 본회의 안건 협의에 나선 홍사덕 한나라당 원내총무는 국회 절차를 모두 거친 진상규명법에 대해 본회의 상정 자체를 반대했다.

한나라당의 안건 상정 저지로 16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으나 2월 27일 본회의에서 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여야의원 33인이 진상규명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키기 위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긴급 상정시켜 과반수에서 단 한표 차로 가결됐다. 그리고 바로 진상규명법안이 상정되자 한나라당은 돌연 의원 총회를 이유로 법안 제안 설명 중 소속의원 전원이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를 연출하며 또 한번 법안 의결을 연기시켰다.

그 후 한나라당 지도부는 공공연히 총선과 보수를 거론하며 법 제정 반대를 표명하고 공천권으로 의원들을 압박해 '진상규명법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결국 진상규명법안은 3월 2일 본회의에서 찬성 72, 반대 96, 기권 7로 부결됐다.

진상규명법안은 동학농민혁명군명예회복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법과 함께 4대 과거청산개혁입법으로 심의됐으나 16대 국회에서 유일하게 부결됐다. 국회의 모든 절차를 거쳤고 100여 년 전의 과거사도 법으로 제정되었으므로 유족들은 지난 세월의 고통을 달래며 입법을 고대했다. 한나라당의 끈질긴 반대가 이어질 때마다 생사를 넘나드는 절망을 겪은 유



노무현 대통령에게 진상규명법 제정을 위한 유족 호소문을 전달하고자 한 청와대 앞 집회(2003년)

족들은 결국 법안이 부결되자 눈물도 분노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 진상규명법안 부결과 사회적 망각의 관계

이토록 처절하다 싶을 만큼 법 제정을 결사 반대 한 한나라당의 논리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구태의 연한 색깔론과 '진상규명법이 대한민국 흔들기 법'이라는 궤변뿐이었다.

일제 침략기를 거치고 해방된 우리 사회에서 이데올로기적 분단은 강대국의 이해대로 정치적 선택권을 강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독재정권의 이익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여겨졌다. 이 과정에서 이데올로기는 모든 것을 유도하고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당시 '빨갱이' 또는 '부역자' 라는 이데올로기적 언어를 쓰는 것이 애국의 전부였다. 정권의 이익에만 복무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정당성을 보장해 주었다.

국가의 존립 목적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장

하는 것이고 이것은 법에 의한 지배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통치 또는 통치자만이 유일한 진리였다. 따라서 이른바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민간인들이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과 국군, 경찰 및 그들의 비호를 받는 우익조직들에 의해서 학살당하는 만행이 자행됐다. 유일한 반공 드라이브는 전쟁 전후에 발생한 수많은 민간인학살 사건이 법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정당한 행위로 간주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반세기를 넘긴 2004년에도 한나라당과 수구보수세력은 민간인학살이라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자는 요구에 '색깔'을 덧씌웠다. 진상규명법은 "재향군인회 등의 반대와 국군·경찰 등이 수행했던 애국활동이 매도될 수 있(한나라당 대변인실, 3월 2일)"으며, 유사한 "4·3법이 공산반동들의 만행은 축소하는 반면 토벌대에 의한 피해만 집중 조명함으로써 민주항쟁으로 왜곡시킨 것처럼 대한민국의

기반을 흔들 법(대한민국 지키기 비상위원회 성명, 2월7일)”이라고 주장했다.

진상규명법안은 “6·25전쟁휴전이전 민간인희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인권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인권신장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준비 되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국군·경찰·공무원, 국제연합군, 준군사조직의 구성원, 비정규전투조직 구성원과 인민군·중공군·북한정권의 동조조직에 의하여 작전수행 그 밖의 조직적 활동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제2조)”을 진상 규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결국 색깔론에 의해 부결 당하고 말았다.

유족들과 사회단체, 양식 있는 지식인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민간인 학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

력해 왔다. 하지만 이런 민간의 노력은 어떤 면에서 공식적인 것이 아니다. 민간인 학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

따라서 진상규명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다. 역으로 말하면, 국회에서 진상규명법을 부결시켰다는 것은 곧 국가가 진상규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민주주의적이고 파쇼적인 발상이자 우리 사회의 역설이다. 여기에 법 제정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남미는 과거 군부 정권시절에 민주화 인사들을 무참히 죽이고 그들의 자식들을 가해자인 군부의 양자식으로 삼아 더 이상의 저항을 하지 못하게 했다. 인간성을 말살함으로써 자신의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야만을 저지른 것이다. 어떤 면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이 구조화되지 못 한 것도 우리 역사에서 민간인 학살의 사실과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분식된 애국만을 유일한 존재 가치로 삼으려는 야만이 존재했고 현재까지 유효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가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망각을 강요받는 구조에 살고 있다. 국가권력이 저지른 민간인학살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법 제정이 무산되면서 우리 사회는 역사적 진실을 기억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또 얼마간 망각하게 되었다.



국회 법사위의 심의 지연 규탄 및 과거사 4대법 조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2004년 2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피학살자 유족들이 학살 문제를 자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가치로서 망각하지 않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살아 있다는 사실이다.

### 진상규명법, 17대 국회 개원 즉시 제정해야

유사한 민간인학살 사례인 거창 사건은 1996년에 이미 법이 제정됐다. 또 제주 4·3사건 희생자 문제도 해결 됐다. 올해 2월에는 노근리 미군 학살 문제도 법제화 됐다. 하지만 똑같은 학살인데도 우리 사회는 죽음마저 차별하고 있다. 힘 있는 사람들의 특권으로 제시될 때만이 해결되는 전근대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가 용인되고 있는 것이다.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보장하지 않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가 아니듯, 생명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회도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과거는 단순히 흘러간 현재가 아니라 오늘과 내일을 연결하는 통로이자 좌표이기 때문이다.

진상규명법은 유족들의 한을 풀고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법이다. 민간인 학살 문제는 단지 '불행한 과거사'가 아니다. 당시 이 문제를 덮어 두었기 때문에 군사정권 시절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바로 지금 민간인 학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진상규명법을 제정하는 것은 잊혀졌던 과거를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망각을 강요하는 우리 사회의 억압 구조를 해소하고 민주발전을 이루는 것이



민간인 피학살자를 위한 여의도 해원관에서 통곡하는 유족들(2003년 5월)

다. 나아가 수십 년 동안 통탄의 세월을 살아온 우리의 평범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의 삶과 인권이 소중해지는 인권국가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놓는 것이다.

17대 국회가 최초로 할 일은 16대 국회의 구태 정치로 희생된 민간인 학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또 분명히 기억할 것을 정립하는 일이고 개혁과 발전의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극우의 시각으로 애국을 논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애국은 그 국민들의 생명권을 지키고 앞으로도 그런 야만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행동이다. 지금 정치권이 유족과 국민 그리고 역사에 대해 답을 주어야 한다.